



OECD 꼴찌국에서 벗어나 한국형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위하여

소액·다수 피해 시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실용적 설계 제안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ewlee@jihyanglaw.com

대한민국, 집단적 금전배상 제도 부재의 OECD 3대 국가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은 금전 손해배상을 포함한 집단구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5년 현재, 미도입 국가는 **대한민국, 스위스, 튀르키예** 단 **3곳**뿐입니다.

미도입 3개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대한민국의 현실

튀르키예
(Turkey)



금전배상은 불가하나,
침해 중지뿐만 아니라
위법 확인, 권리 확정,
장래 침해 예방 등
광범위한 금지 청구 가능.

스위스
(Switzerland)



금전배상 청구권 양도를
허용하여, 단체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소송을 수행.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과
달성.

대한민국
(South Korea)



소비자 단체소송은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
예방적, 확인적 소송 불가.

결론: 대한민국의 현 제도는 예방과 확인 기능이 부재하고 사후 구제 범위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집단적 권리구제는 왜 필수적인가?

1.

실질적 사법 접근권 보장 (Access to Justice)



소송 비용이 피해액보다 큰 '소액 다수 피해'는 개별 소송을 포기하게 만듭니다(합리적 무관심).

집단소송은 경제성 없는 소액 청구를 '청구 가능한 권리'로 전환시킵니다.

"개별 소송의 비용과 부담이 배상액보다 클 경우, 소비자는 권리 행사를 단념하게 된다. 대표 소송 메커니즘은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여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EU 집단적 권리구제 지침

2.

대등한 협상력 확보 (Parity of Arms)



거대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을 조직화하여 기업과 대등한 협상력을 부여합니다.

개인을 넘어, 시장과 사법 시스템을 위한 제도

3.

위법행위 억제 및 시장 공정성
(Deterrence & Market Fairness)



불법 이익을 전액 박탈하여 기업의 위법행위 유인을 근절합니다.

사법적 구제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사적 집행 (Private Enforcement)’ 역할을 수행합니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 OECD 소비자 분쟁 해결 및 구제 권고

4.

사법 경제 및 효율성
(Judicial Economy)



수천 건의 동일 소송이 법원에 쇄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심리를 피하고 판결의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합니다.

한국의 '집단소송 포비아': 과장된 공포인가, 타당한 우려인가?

통념 (Myth)

“옵트아웃, 디스커버리, 징벌적 배상을 갖춘 미국식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다.”

공포는 과장되었으며, 오히려 현 제도는
실효성 없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현실 (Reality)

증권집단소송법 (2005년 도입)의 교훈

총 17건

지난 20년간 제기된 소송

제도 무력화의 실체: 기업의 지연 전략과 복잡한 절차.

소송 '허가'를 받는 데만 대법원까지 최대 3심 진행.
이후 본안 소송 3심 별도 진행 (최대 6번의 재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2011:
소송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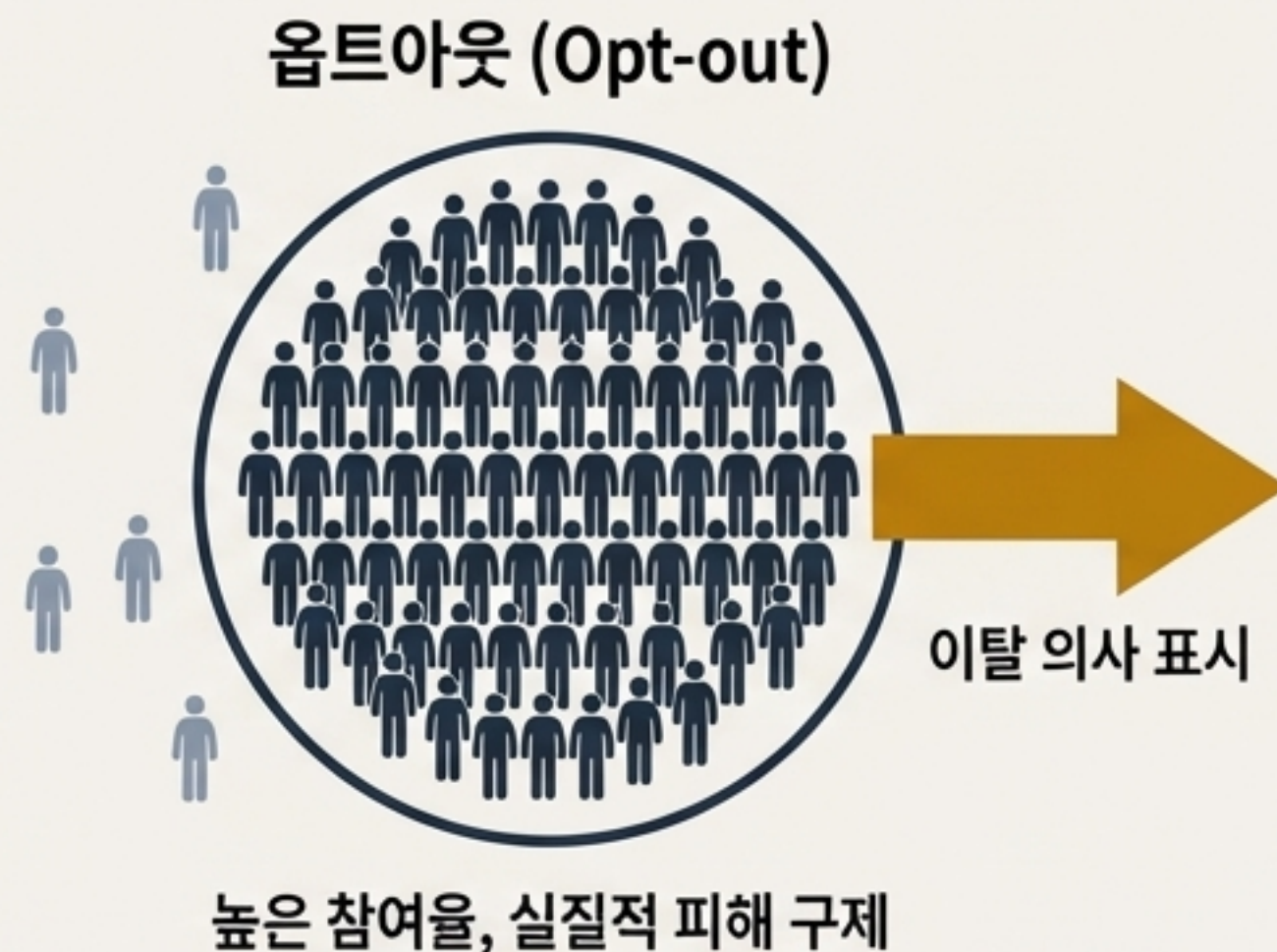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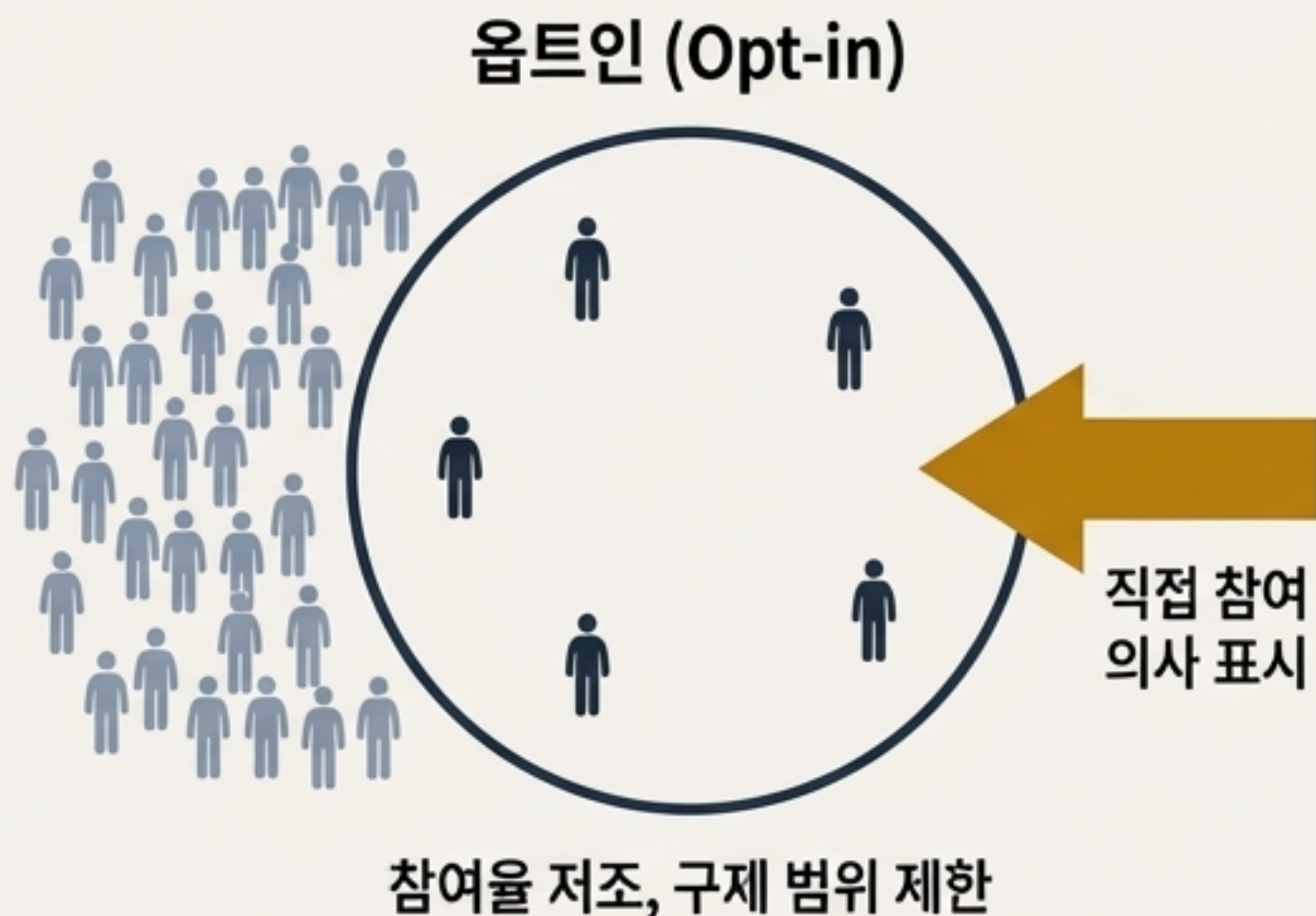
2016: 소송 허가
(5년 소요)

2020: 최종 배상
(총 9년 소요)

피해액의 **10%**만 배상.

한국형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원칙 1: 실효성 확보

소액·다수 피해는 옵트아웃(Opt-out)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옵트인 방식은 '합리적 무관심'으로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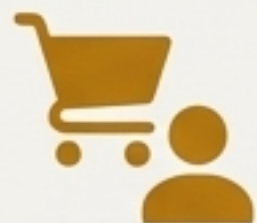
절충안 (Hybrid Model as an option)

- 소액·다수 피해는 옵트아웃 원칙. / 위자료, 상해 등 개별성이 크거나 고액 사건은 법원 판단하에 옵트인 적용 가능 (벨기에, 영국 사례).

핵심 원칙 2: 포괄적인 소송 범위와 대상

1. 소송 범위 (Scope of Litigation)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집단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 보호
(General Consumer Prot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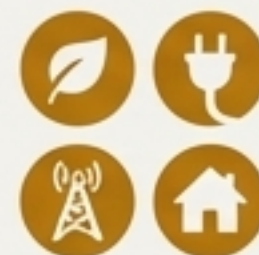
공정거래
(Fair Trade / Competition)



개인정보보호
(Data Protection)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환경, 에너지,
통신, 주택 등

2. 소송 대상 (Subject of Claims)

단순한 금지 청구를 넘어 실질적 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확인 청구 (Declaratory Action):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



이행 청구 (Performance Action):
금전 배상, 수리, 교환,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구제 조치.

3. 보호 대상 확대 (Expanding Protection)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 VDuG 사례).

핵심 원칙 3: 전문성 있는 소송 주체의 확립

현재의 소제기 적격 단체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소수에 한정되어 제도 활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익성 (Public Interest)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전문성 (Expertise)

소비자, 환경, 금융 등 각 분야별 전문성 보유.



독립성 (Independence)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성 확보.



투명성 (Transparency)

공정하고 성실한 소송 수행, 회계 및 운영의 투명한 공개, 외부 감독.

지향점: 소수 단체의 판단에 소비자 권리구제가 봉쇄되지 않도록, 다수의 건전하고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e.g., 독일 약 70여 개 단체).

핵심 원칙 4: 절차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재판 보장

피고의 지연 전술과 비효율적 절차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1. 강력한 증거조사 제도 도입 (Robust Discovery)



기업과 피해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 시 강제금 부과(독일), 비협조 시 원고 주장 인정(네덜란드) 등 실질적 제재 필요.

2. 신속한 적격성 판단 절차 (Expedited Certification)



소송 허가 여부 판단에 수년이 걸리는 현행 증권집단소송의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적격성 판단 기간을 법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벨기에 사례)

3. 전문 법원 관할 지정 (Specialized Court Jurisdiction)



고등법원 전속 관할 등으로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독일 사례)

일본 제도의 한계를 통해 배우는 교훈

일본 소비자 단체소송의 현실:

단 8건

2016년 도입 후 10여 년간 제기된 피해 회복 소송.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평가됩니다.

- ⚠ 1. 복잡한 2단계 절차:
1단계(공통 의무 확인) 승소 후, 2단계(개별 금액 확정)를 별도로 진행해야 함. 직접적인 이행 청구 불가.
- ⚠ 2. 엄격한 옵트인: 1, 2단계 절차에 각각 개별적으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해 참여율 극히 저조.
- ⚠ 3. 좁은 소송 범위: 재산적 피해에 한정. 위자료 청구 등은 불가.

시사점: 실효성 없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절차의 실질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용적 대안: 단체소송의 진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집단소송’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면,
실효성을 갖춘 ‘단체소송’도 충분히 고려
가능합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입니다.



당면 과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Immediate Task: PIPA Amendment)

현재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단체소송을 통한 금전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는 집단적 권리구제 도입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집단구제 제도 비교: 대한민국의 현주소

국가 (Country)	소송 유형 (Type)	금전 배상 (Monetary Damages)	Opt-in / Opt-out	소송 주체 (Plaintiff)
미국	집단소송 (Class Action)	가능	옵트아웃 (원칙)	개인, 단체
독일	구제소송/확인소송	가능	옵트인 (등록제)	적격 단체
프랑스	단체소송 (Action de groupe)	가능	옵트인 (판결 후 참여)	공인된 협회
네덜란드	집단소송 (Collective Action)	가능	혼합형 (내국인: 옵트아웃)	재단, 협회
영국	그룹소송/집단청구	가능	혼합형 (경쟁법: 옵트아웃 가능)	개인, 단체 대표
일본	소비자 단체소송	가능 (2단계)	엄격한 옵트인	내각총리대신 인증 단체
대한민국	증권: 집단소송 소비자: 단체소송	증권: 가능 소비자: 불가	증권: 옵트아웃 소비자: 해당 없음	제한적 (소수 단체, 공정위 등록 등)

핵심 요약: 대한민국의 제도는 금전 배상 범위, 소송 주체 자격 등 모든 면에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22대 국회의 선택에 미래가 달렸다

- 현대 디지털 경제에서 소액·다수 피해의 집단적 구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대한민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 도그마적 접근이 아닌,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한국형'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
실질적 사법
접근권 보장



시장:
공정한 경쟁
촉진 및
위법행위 억제



사법:
소송 경제 및
사법 효율성 제고